

안전한 도시철도, 편리한 교통서비스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2017년 7월 법률상식 연재 알림

- 1. 관련근거
 - 가. (구)서울메트로 총무처-8100('16.11.21) 『2017년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제출』
 - 나. (구)서울메트로 총무처-379('17.01.10) 『2017년 소송현황 보고』

2. 최근 임대시설과 관련하여 단전, 단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2017년 7월 법률상식 연재 주제로 선정하여 『임대시설관리관련 형사상 업무방해죄 성립에 대한 이해』를 알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주요내용
 - 업무방해죄의 근거조항
 - 업무방해죄의 구성
 - 임차인의 무단 상가점유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법

- 붙임 : 1. 임대시설관리 관련 형사상 업무방해죄 성립에 대한 이해 1부.
 2. 대구지방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4노398 판결문 1부.
 3. 대법원 2006.4. 27. 선고 2005도8074 판결문 1부. 끝.

법무처장

수신자 가1~가51, 나1-2, 다1, 마27, 아1-3, 나1-아19, 나1-아19

주임 황소영	부장 최인수	처장 07/31 엄익철
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

협조자 부장 김문규

시행 법무처-1033 (2017.07.31.) 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전화 02-6311-9089 전송 02-6311-4288 / youngs611@seoulmetro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